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고시

국가기술표준원 (2021. 07. 19)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질 추가 지정을 개정고시 하였으며,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국가기술표준원은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①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, 제22조제2항에 따른 ②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, 제25조제2항에 따른 ③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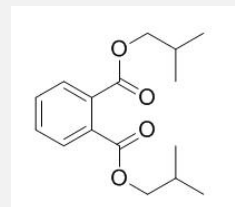
프탈레이트 가소제 1종 추가(현행 6종 ⇨ 개정 7종)

1. 개정사유

-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'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' 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강화

2. 주요내용

- 현재 규제중인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**신규 물질(DIBP)** 추가 지정
* (현재) 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



3. 부칙

-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**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**